|  |  |  |
| --- | --- | --- |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8]4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주관 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광동 분서, 각 직속 해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 감찰 전문요원 사무소  최근 국내 장비 제조업 및 그 부대 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 주관 부문, 업계 협회, 기업 대표 등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기초 하에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1 참고)와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 상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2 참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은 본 통지 첨부 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첨부 2에 열거된 상품을 확실히 수입할 필요가 있으면, 관세와 수입 부분의 증치세는 징수를 면제한다. 첨부 1과 2에 집행연한이 명시된 경우 유관 장비, 제품, 부품, 원재료 면세 집행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국내 산업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00만 KW급 원전유닛 (2세대 개량형 원전유닛) 등 장비의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관련 장비와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에 2019년도 면세 수입 한도 사전 조달을 상응하게 폐지한다.  2.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3 참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비준된 <국무원의 수입 설비 세수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국발[1997]37호) 유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비교 대조하여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아래 항목과 기업에 대해 첨부 3에 열거된 자체 사용 설비를 수입하고 또한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에 따라 수입한 기술 및 부품은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를 징수한다.  2.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 항목과 외상 투자 항목  2.2 외국 정부 대부와 국제 금융 조직 대부 항목  2.3 외상(외국계 기업)이 가격을 매기지 않고 수입 설비를 제공한 가공무역기업  2.4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 항목  2.5 <해관총서의 외상 투자 유관 수입 세수 정책을 보다 더 장려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서세[1999]791호)에 규정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 투자로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기술 개량 항목을 진행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조정 전 이미 비준한 상술 항목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 비준한 상술 항목과 기업이 2019년 6월 30일 전(6월 30일 포함)에 설비를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39호) 첨부3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 (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항목과 기업이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중 열거한 설비를 수입한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를 징수한다.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보증하기 위해, 유관 항목과 기업이 상품을 수입한 것에 대해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과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2012년 수정)>을 비교 대조하여 징수 면제로 심사 결정될 경우,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과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2012년 수정)>에 열거된 상품 명칭이 동일하거나 또는 오직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에만 열거된 상품은 일률적으로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에 열거된 상품 및 그 기술 규격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3. 2019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39호)는 폐지한다.  첨부:  1.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pdf  2.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 상품 목록 (2018년 수정). pdf  3.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pdf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  2018년 11월 14일 |  |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  **有关目录的通知**  财关税〔2018〕42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发展改革委，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根据近年来国内装备制造业及其配套产业的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企业代表等方面意见的基础上，财政部、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税务总局、能源局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进行修订。现通知如下：  　　一、《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见附件1）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8年修订）》（见附件2）自2019年1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1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附件2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附件1、2中列明执行年限的，有关装备、产品、零部件、原材料免税执行期限截止到该年度12月31日。  　　根据国内产业发展情况，自2019年1月1日起，取消百万千瓦级核电机组（二代改进型核电机组）等装备的免税政策，生产制造相关装备和产品的企业2019年度预拨免税进口额度相应取消。  　　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见附件3）自2019年1月1日起执行。对2019年1月1日以后（含1月1日）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有关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  　　（一） 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  　　（二） 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  　　（三） 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  　　（四）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  　　（五）《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  　　为保证《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调整前已批准的上述项目顺利实施，对2018年12月31日前（含12月3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19年6月30日前（含6月30日）进口设备，继续按照《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7〕39号）附件3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的公告》（2012年第83号）执行。  　　自2019年7月1日起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中所列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为保证政策执行的统一性，对有关项目和企业进口商品需对照《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和《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审核征免税的，《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与《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所列商品名称相同，或仅在《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中列名的商品，一律以《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所列商品及其技术规格指标为准。  　　三、自2019年1月1日起，《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7〕39号）予以废止。  附件:  [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P020181126389365755055.pdf) [2：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8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P020181126389366058573.pdf) [3：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8年修订）.pdf](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P020181126389366341501.pdf)  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  　　2018年11月14日 |